

1. 법률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제도 개선)

1. 법률*

가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5/12/30 개정 · 2026/1/2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자기주식 공시 제도개선 등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기 위함
 -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이 본연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활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
 - 자기주식보고서에 '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, 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, 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'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

2) 주요 내용

-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%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· 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(제 176조의2 제6항)
 - (기존)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%이상 보유하는 경우 연 1회 자기주식 보유현황, 보유목적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고 주요내용을 사업보고서 본문에도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함
 - (개정) 공시대상을 발행주식총수의 1%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확대
 - 보다 많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보유현황, 보유목적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, 자기주식보고서를 반기보고서에도 첨부하도록 하여 연 2차례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함
 - 또한, 자기주식 처리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하여 향후 6개월 간 세부 처리계획을 표 형식으로 상세하게 서술하도록 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□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처리계획 관련 공시 강화(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)

- (기존)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% 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은 향후 자기주식 취득·처분·소각계획을 작성하여 사업보고서에 공시
 - 계획과는 달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않거나 계획에 없던 대규모 처분이 이루어지는 등 공시내용과 실제 이행 현황이 달라 시장과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었음
- (개정) 상장법인이 직전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지난 6개월간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여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함
 - 기존 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30%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

□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·보유·처분 공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)

- (기존) 상장법인은 자기주식을 취득·처분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목적, 예정금액, 주식 수, 방법, 기간 등을 주요 사항보고서로 공시하여야 함
 - 기간 내 보유중인 자기주식 수, 취득·처분 현황 등을 정기보고서(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)에서 공시하여야 함
 - 자기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한 경우 처리계획 등을 사업보고서에 추가로 공시하여야 함
- (개정) 자기주식 공시 위반시 임원해임권고, 증권발행제한, 과징금, 형벌 등 다양한 제재수단을 적극 활용
 - 공시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하여 공시의무 부과 취지가 실질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함

□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정기공시(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) 강화(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)

- (기존) 사업보고서·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,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
- (개정) 사업보고서·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개요, 피해상황, 대응조치 및 전망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

□ 합병 등의 과정에서 이사회 의견서 내실화

- (기존) 상장법인이 합병등을 하는 경우 목적, 기대효과, 가액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,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하여 결의시 공시
 - 이사회 논의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일반 주주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
- (개정) 합병 등의 과정에서 경영진이 이사회 구성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이사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 등도 이사회 의견서에 포함하여 의사회 결의 시점마다 공시하도록 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